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77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을 위한 출입국 관련 특례 사항을 명확히 하며,

중전 승인과제와 동일·유사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판단 기준, 처리 기간·절차를 구체화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위해 특구 내 준주거, 상업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숙박시설 중 일부를 추가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정의 신설(안 제7조제4항)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나.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제9조의4제1항)

현행 규제특례 전문위원회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사전 검토 기능만 보유하고 있었으나,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실증특례 신청 중 동일·유사과제 판단 기준, 처리 기간·절차 신설  
(안 제19조의2제6항부터 제8항)

종전에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 받은 과제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동일·유사한 실증특례 신청 건에 대한 판단 기준, 처리 기간·절차 등을 구체화 함

라. 임시허가 신청 중 동일·유사과제 판단 기준, 처리 기간·절차 신설  
(안 제19조의19제4항부터 제6항)

종전에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 받은 과제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동일·유사한 임시허가 신청 건에 대한 판단 기준, 처리 기간·절차 등을 구체화 함

마.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출입국 특례 절차·내용 신설(안 제21조의2)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사증(査證) 발급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과학기술 관련 분야와 관련된 일부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의 상한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함

바.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 추가 허용(안 별표1)

특구 내 연구소·기업 종사자 및 거주자 등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특구 준주거구역에는 생활숙박시설을, 상업구역에는 생활숙박시설과 일반숙박시설을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대상에 추가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2. 14. ~ 03. 26.)

3) 행정규제 : 규제 없음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제5의2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이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공공연구기관, 연구소기업, 외국연구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2.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제9조의4제1항 중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의결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 및 임시허가에 관한

## 사항의 사전 검토

2. 법 제16조의2제7항 및 법 제16조의7제7항에 따라 종전에 연구개발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이하 “종전 승인과제”라 한다)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이하 “동일·유사 과제”라 한다)에 대한 실증특례 지정 또는 임시허가의 심의·의결

제19조의2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실증특례 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유사 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1. 종전 승인과제와 신기술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또는 관련 법령이 동일·유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내용이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유사한 경우

나. 신기술의 실증 범위 또는 추진 방법이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유사한 경우

2. 제9조의4제7항에 따른 검토위원회에서 동일·유사 과제로 판단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동일·유사 과제를 신청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관계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제1항 중 “법 제16조의2제3항”을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으로,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2제3항”을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을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제19조의2제7항 후단”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법 제16조의2제7항”을 “법 제16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19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2제9항”을 “법 제16조의2제10항”으로 한다.

제1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2제10항”을 각각 “법 제16조의2제11항”으로 한다.

제1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2제11항”을 “법 제16조의2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을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제19조의2제7항 후단”으로 한다.

제19조의11제1항제2호 중 “법 제16조의2제3항”을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제19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9조의13제1항 중 “법 제16조의7제13항”을 “법 제16조의7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조의2제15항”을 “법 제16조의2제16항”으로, “법 제16조의7제9항”을 “법 제16조의7제10항”으로 한다.

제19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7제13항”을 “법 제16조의7제14항”으로 한다.

제19조의19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4항) 중 “법 제16조의7제4항”을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으로,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7제4항”을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조건(”를 “조건(제5항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6항) 중 “법 제16조의7제11항”을 “법 제16조의7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임시허가 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유사 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1. 종전 승인과제와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법령이 동일·유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내용이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유사한

경우

나. 사업의 범위 또는 추진방법이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유사한 경우

2. 제9조의4제7항에 따른 검토위원회에서 동일·유사 과제로 판단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동일·유사 과제를 신청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7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법 제16조의7제7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0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19조의19제5항”을 각각 “제19조의19제8항”으로 한다.

제19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6조의7제8항”을 각각 “법 제16조의7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19조의19제5항”을 “제19조의19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7제8항”을 “법 제16조의7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의23제1항 중 “법 제16조의7제9항”을 “법 제16조의7제10항”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별표1의2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대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교수(E-1): 8년
2. 연구(E-3): 8년
3. 기술지도(E-4): 8년
4. 특정활동(E-7) : 5년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공공연구기관,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연구기관 및 법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기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2조제3항제5호 중 “법 제16조의2제7항”을 “법 제16조의2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16조의2제10항”을 “법 제16조의2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16조의2제11항”을 “법 제16조의2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법 제16조의7제8항”을 “법 제16조의7제9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라목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일반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한다.

## 부 칙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 ③ (생   략) <u>&lt;신   설&gt;</u>	제7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법 제6조제2항제5의2호에</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u> <u>과학기술 인력”이란 「과학기술</u> <u>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u> <u>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u> <u>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과학</u> <u>기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u> <u>사람을 말한다.</u> 1. <u>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u> <u>기술기업, 공공연구기관, 연구</u> <u>소기업, 외국연구기관에서 20</u> <u>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u> <u>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u> <u>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u> 2. <u>「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u> <u>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u> <u>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20</u> <u>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u> <u>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u> <u>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u>
제9조의4(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제9조의4(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  
라 한다)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  
회에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  
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신 설>

② ~ ⑨ (생략)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의  
결하기 -----  
-----  
-----  
-----  
-----  
-----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 및 임시허  
가에 관한 사항의 사전 검토
2. 법 제16조의2제7항 및 법 제1  
6조의7제7항에 따라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  
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  
(이하 “종전 승인과제”라 한  
다)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  
한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  
스·제품(이하 “동일·유사  
과제”라 한다)에 대한 실증특  
례 지정 또는 임시허가의 심  
의·의결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실증특례의 신청) ① ·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제19조의2(실증특례의 신청)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실증특례 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유사 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1. 종전 승인과제와 신기술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또는 관련 법령이 동일·유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내용이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유사한 경우

나. 신기술의 실증 범위 또는 추진 방법이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유사한 경우

2. 제9조의4제7항에 따른 검토위원회에서 동일·유사 과제로 판단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동일·유사 과제를 신청받은 과학기술정보통

<신 설>

제19조의3(실증특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증특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신청

신부장은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실증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관계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실증특례의 지정 등)

① -----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  
-----.

② -----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  
-----  
-----  
-----

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  
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고해야 한다.

1. ~ 7. (생략)

8.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  
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생략)

제19조의4(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  
라 실증특례 재심의를 신청하려  
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  
에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9조의7(실증특례의 지정을 위  
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법  
제16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  
-----.

1.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16  
조의2제3항 또는 제19조의2제  
7항 후단-----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8항-----  
-----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7(실증특례의 지정을 위  
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법  
제16조의2제10항-----  
-----  
-----  
-----  
-----.

1. ~ 3. (생략)

제19조의8(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10항 본문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6. (생략)

②·③ (생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변경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2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의8(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11항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법 제16조의2제11항-----  
-----  
-----  
-----  
-----  
-----  
-----  
-----  
-----  
-----.

⑤ 법 제16조의2제11항 -----  
-----  
-----  
-----  
-----.

1. ~ 3. (현행과 같음)







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19조의19(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19(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임시허가 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유사 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1. 종전 승인과제와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법령이 동일·유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내용이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유사한 경우

나. 사업의 범위 또는 추진방법이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유사한 경우

2. 제9조의4제7항에 따른 검토위원회에서 동일·유사 과제로 판단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동일·유사 과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거나 임시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

제를 신청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7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법 제16조의7제7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⑦ -----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  
-----.

⑧ -----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  
-----  
-----  
-----

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 5. (생략)

6. 임시허가의 조건(법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16조의7제11항에 따른 시험·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20(임시허가의 유효기간)

① (생략)

② 법 제16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19제5항에 따른 임

-----  
-----  
-----.

1. ~ 5. (현행과 같음)

6. ----- 조건(제5항 또는 -----  
-----

⑨ 법 제16조의7제12항-----  
-----  
-----.

⑩ ----- 제9항-----  
-----  
-----  
-----.

제19조의20(임시허가의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1. 제19조의19제8항-----

시허가서 사본

2. ~ 7.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의22(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7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6. (생략)

②·③ (생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변경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

2. ~ 7. (현행과 같음)

③ -----  
-----  
-----  
-----  
----- 제19조  
의19제8항 -----  
-----  
-----  
-----  
-----.

제19조의22(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7제9항-----  
-----  
-----  
-----  
-----  
-----  
-----.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법 제16조의7제9항-----  
-----  
-----

허가서에 제19조의19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7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제19조의23(임시허가에 따른 법령 정비) ①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7제9항 본문에 따라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생략)

<신 설>

----- 제19조의19제8항 -----

⑤ 법 제16조의7제9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3(임시허가에 따른 법령 정비) ① ----- 법 제16조의7제10항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별표1의2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대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교수(E-1): 8년

2. 연구(E-3): 8년

3. 기술지도(E-4): 8년

4. 특정활동(E-7) : 5년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 기업, 공공연구기관,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연구기관 및 법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기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발급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재단에 위탁한다.

1. ~ 4. (생략)

5.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의 접수

제4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6조의2제8항-----  
-----

<p>6. <u>법 제16조의2제10항</u>에 따른 실증특례 변경 신청의 접수</p>	<p>6. <u>법 제16조의2제11항</u>----- -----</p>
<p>7. <u>법 제16조의2제11항</u>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의 접수</p>	<p>7. <u>법 제16조의2제12항</u>----- -----</p>
<p>8. ~ 11. (생략)</p>	<p>8. ~ 11. (현행과 같음)</p>
<p>12. <u>법 제16조의7제8항</u>에 따른 임시허가 변경 신청의 접수</p>	<p>12. <u>법 제16조의7제9항</u>----- -----</p>
<p>12의2. ~ 14. (생략)</p>	<p>12의2. ~ 14. (현행과 같음)</p>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4. 00.>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용도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제30조제1항 본문 관련)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용도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용주거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일반주거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공장은 건축을 허용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3. 준주거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4. 상업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소, 무도장 및  
무도학원

5. ~ 10.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 락 처	(044) 202 - 4746, 4744